

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8. 31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6. 9. 1
- 다. 상 정 일 자 : 2006. 9. 12 (제142회 사하구의회 정례회
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, 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도시개발추진단장 서정세)

가. 제안사유

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7848호, 2006.1.11 공포, 2006.7.12 시행) 및 같은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9608호, 2006.7.11 공포, 2006.7.12 시행)이 제정됨에 따라 원인자·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규정(안 제1조)
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조)
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및 국가의 보조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)
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,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,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합 의 : 예산 및 기반시설 관련 담당부서 합의
- 입법예고 : 2006. 8. 10 ~ 8. 30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- 기 타 : 조례표준안 시달(시 시설계획과-4324, 2006.7.12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건은,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6. 7. 6부로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운영의 기틀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
- 지난 8.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인자, 수익자 부담원칙을 법정화 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운용을 통한 세수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
- 또한 우리구를 비롯한 각 구·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
-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- 위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